

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
| 의안번호         | 제 75 호               |
| 의 결<br>연 월 일 | 2022년 10월 일<br>(제 회) |

충청북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

|       |             |
|-------|-------------|
| 발 의 자 | 박지현 의원 등 7인 |
| 발의연월일 | 2022년 09월 일 |

# 충청북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박지현 의원 대표발의)

|          |    |
|----------|----|
| 의안<br>번호 | 75 |
|----------|----|

발의연월일 : 2022년 9월 29일  
발의자 : 박지현, 이동우, 김종필,  
김호경, 박진희, 변종오,  
유재목

## 1. 제안이유

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도의 실정에 맞게 정비하고, 상위법이 개정되어 근거 조문이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가. 용어를 도의 실정에 맞게 정비(안 제3조)

- “관리계획” → “종합관리계획”

나. 상위법이 개정되어 근거 조문이 변경된 사항을 반영(안 제3조)

- “수질 및 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” → “물환경보전법”

## 3. 조례안 : 붙임

## 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붙임

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

다. 협의 : 충청북도 환경산림국 수자원관리과

라. 조례안 예고 : 생략(「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4조제4호)

## 충청북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 중 “관리계획” 을 “종합관리계획” 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②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「수도법」 제5조에 따른 수도정비계획, 「하수도법」 제5조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및 「물환경보전법」 제49조에 따른 처리시설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| 현           행   | 개           정           안  |
|---|--|
| <p>제3조(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) ① 충청북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는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물 재이용 관리계획(이하 “관리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할 수 있다.</p> <p>② <u>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「수도법」 제4조에 따른 수도정비기본계획, 「하수도법」 제5조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및 「수질 및 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」 제49조에 따른 처리시설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③ · ④ (생   략)</p> | <p>제3조(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) ① -----<br/>-----<br/>-----<br/>---- <u>종합관리계획</u>-----<br/>-----<br/>--.</p> <p>② <u>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「수도법」 제5조에 따른 수도정비계획, 「하수도법」 제5조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및 「물환경보전법」 제49조에 따른 처리시설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③ · ④ (현행과 같음)</p> |

## 관계법령

### □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

- 제6조(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) ①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·군수(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. 이하 같다)는 물 재이용 기본계획에 따라 공업용수 수요 등 지속적으로 다량의 물 수요가 발생하는 경우 처리수의 공급방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관할 지역에서의 물의 재이용 촉진에 관한 계획(이하 “물 재이용 관리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 <개정 2015. 3. 27., 2018. 12. 24.>
- ② 하수도가 둘 이상의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 또는 시·군(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. 이하 같다)의 관할 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가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한다. <개정 2015. 3. 27.>
- ③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·군수는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「수도법」 제5조에 따른 수도정비계획, 「하수도법」 제5조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및 「물환경보전법」 제49조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. <개정 2015. 3. 27., 2016. 1. 27., 2017. 1. 17., 2022. 1. 11.>
- ④ 환경부장관은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.
- ⑤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·군수는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후에는 5년마다 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타당성을 다시 검토하고 필요하면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. <개정 2015. 3. 27.>
- ⑥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·군수는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18조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을 기본으로 하여야 한다. <개정 2015. 3. 27.>